

2024년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자생력 증대와 사업 성공 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6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중 호
〈주관기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이 태 식

1

사업목적

- (사업목적)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제품·서비스의 시장진출 및 경쟁력 증대를 통한 안정적 운영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단계에 따른 맞춤형 사업화 지원
- (사업 시행기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SETCOOP)

2

사업개요

○ 지원 유형별 대상 및 규모

가. (지원대상)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고경력형>은 조합원의 과반이 만 50세 이상, 관련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나. (지원규모) 총 5개 내외 협동조합 / 1개 조합당 유형별 최대 3~5천만 원 지원

다. (지원유형) 지원목적에 따른 3개 유형별 지원(일반형·심화형·고경력형 中 택1 지원)

※ 응모 시 1개 유형만 신청 가능

< 표1. 유형별 지원목적 및 지원규모 >

구분	일반형	심화형	고경력형
지원 목적	제품·서비스 개발·개선을 통한 시장진출(상품화) 지원	성능 고도화, 원가절감, 연계제품 개발 등 시장경쟁력 강화	고경력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사업 활성화
대상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고경력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규모	5개 내외		
지원금	조합당 최대 30백만 원	조합당 최대 50백만 원	조합당 최대 30백만 원

※ 일반형 및 심화형은 유형 선택 시 「참고 1」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 유형선택 예시」 참조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24년 11월 15일까지

○ (지원항목) 유형별 지원항목 內 사업화 추진을 위한 직접적인 소요예산

- 지원항목별 소요내역에 대한 총사업비 편성 방법 및 기준은 [참고 2, 3] 확인

< 표2. 유형별 지원항목 및 세부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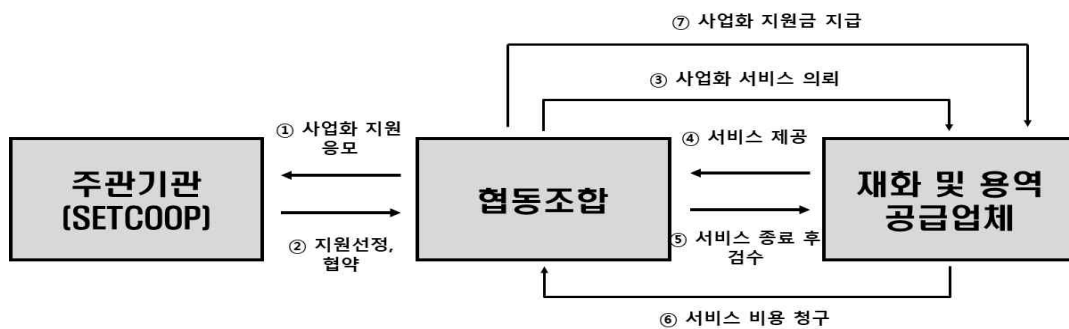
유형	일반형	심화형	고경력형
지원 항목	① 사업화 전략수립 - 아이템의 기술적 보완 사업적 전략 수립 등 전문법인에 의한 기술사업화 컨설팅 소요 비용 - 정부지원금 최대 10백만원 가능 ② 기술·제품 개발 및 개선 - 사업화 아이템의 개발과 생산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재료구매,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 시제품 개발 등	일반형(①, ②) 지원항목 + ③ 생산 및 품질강화 - 사업화 아이템의 기술 영업전략 확보를 위한 컨설팅 정부지원금 최대 5백만 원 추가 인정 (①의 전문컨설팅 포함 최대 15백만 원 가능) - 보유한 아이템의 생산 효율화, 시장 매출력 증진을 위한 개발·개선비용 인정	일반형(①, ②) 지원항목
【예시】	① 사업화 전략 수립 - 기술·특허·사업성 분석 등 기술사업화 전략 컨설팅 -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권 컨설팅 (단,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경비 지원 제외) 등 ② 기술·제품 개발 및 개선 -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기자재 구매, 전산처리, 시험설비 제작, 정보DB 사용료, 시험·분석 위탁, 프로그램/플랫폼 위탁개발 등 ③ 생산 및 품질 강화 - 국내외 전략 시장 내 매출처 영업전략을 위한 시장분석 등 전문 컨설팅 - 생산 효율화를 위한 표준화, 원가절감 및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 양산용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기자재 구매,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및 부스 운영비, 영업용 카탈로그 제작비(해당 과제와 무관한 협동조합 소개용도는 지원 제외) 등		

※ 컨설팅의 경우 응모 시 컨설팅 계획 및 견적서 제출 필수(신청서 내 Part I. 6 컨설팅 계획서)

○ (운영방식)

가. (정부지원금 지급방식) 사업에 선정된 협동조합이 주관기관과 협약체결 후 주관기관(SETCOOP)에 청구한 지원금 일체를 수령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재화 및 용역 등을 제공한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

【 지원금 지급 절차 】



나. (공급업체 선정) 공급업체는 협동조합이 필요한 용역 및 구매와 관련·취급 하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기관을 협동조합이 직접 선정·활용

☞ 공급업체 선정·관리 시, 아래의 공급업체 활용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 부적정 업체 활용 시 환수 등 제재조치 실시

(정의) 참여 협동조합이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 또는 기관 등을 말함

(유의사항)

- 공급업체는 협동조합에서 직접 선정
 - 단, 공급업체 선정에 대한 내부결의서, 견적서, 타견적서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주관 기관에서 요청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및 종목 등이 참여협동조합이 사업화를 위해 추진 하고자 하는 용역 및 구매와 관련·취급하는 업종이어야 함
- 공급업체는 협동조합에서 직접 선택하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개인 및 조합원과 특수관계인 경우 공급업체로 선정할 수 없음
- 공급업체를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 법인조합원사는 가능
 - 단, 외부업체와의 견적비교 필수
- 공급업체의 대표나 직원이 협동조합의 개인조합원일 경우에는 공급업체에 지급되는 사업비 중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 계상은 불인정

(공급업체 사업 참여시 금지사항)

- 공급업체가 참여 협동조합에게 거래 대가로 현물 또는 현금을 제공한 경우
- 공급업체가 협동조합의 사업책임자를 사칭하여 본 지원사업을 대리 신청한 경우
- 공급업체 등록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용역 공급업체가 협약/거래 사항을 제3자에게 재하청하는 경우

다. (정부지원금 신청) 선정 협동조합은 현금 자부담금 납입 및 이행(지급)보증 보험증권을 SETCOOP에 제출한 후 정부지원금 신청 가능

- 현금 자부담금은 협동조합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다른 사업비와 별도로 관리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은 정부지원금 금액에 대해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발급·제출
- ※ 보증기간 관련, 협약에 따라 협동조합은 지원받은 사업을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지해야 하므로 보험의 보증기간도 이와 동일

3

우수 과제(협동조합) 지원

○ (시장화 촉진 컨설팅) 동 사업을 통해 완성한 협동조합 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진출을 위해 컨설팅 프로그램을 협약기간 내 추가제공

< 표3. 시장화 촉진 컨설팅 지원대상 및 내용 >

구분	내용
대상	목표한 사업화 계획을 조기완료*한 협동조합 * 조기완료 : 협약서상 목표 결과물 완성 또는 정부지원금 집행률 70% 이상 달성('24.8.31. 기준)
내용	도출 결과물의 시장 진출 및 잠재 고객, 자금 등의 확보를 위해 전문업체의 교육 및 컨설팅 등 서비스 지원 ※ 교육 및 컨설팅 주제 예시 : 기술·제품 보호전략, 홍보마케팅, 시장반응조사 등
규모	5개 내외 협동조합
방식	· '24년 5월 ~ 8월 컨설팅 수요조사 등을 통한 대상 선정 · '24년 7월 ~ 11월 컨설팅 서비스 진행

※ 일정 및 운영 방법 등 세부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선정 협동조합에 개별 공지

4

신청자격

○ (신청자격) 유형별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표4. 유형별 신청자격 >

일반형	심화형	고경력형
아래 표 ① ~ ③ 해당		아래 표 ① ~ ④ 해당
①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② (사업내용) 주사업의 40% 이상이 과학기술 관련 사업인 협동조합 ③ (인적구성) 조합 내 이공계 인력이 신청일 기준 전체 조합원 중 50% 이상 이거나 5명 이상인 협동조합		
④ (고경력형) 접수 마감일 기준 만 50세 이상 고경력(과학기술 관련 분야 경력 10년 이상) 과학기술인 조합원이 50% 이상인 협동조합		

※ 상세 내용은 「참고 4」 신청자격 상세 기준 안내' 확인

○ (신청제한) '「참고 5」 신청 제한사항 및 지원제외' 를 반드시 확인

5

사업 소개 및 설명

- (채널) SETCOOP 홈페이지(www.setcoop.net)
- (내용) 지원사업 소개 및 신청 안내, 신청서 작성 가이드 등
- (방식) 설명 관련 자료를 SETCOOP 홈페이지에 게시
 - ※ 소개/설명 방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SETCOOP 홈페이지 내 공지 예정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 · 접수기간) 2024년 2월 26일(월) ~ 4월 1일(월) 16시 접수분까지 유효
- (신청방법) 신청서류 이메일 접수(setcoop@kofst.or.kr)
- (신청 시 제출서류)
 - ‘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㉕ 구비서류(①~⑪)’는 모두 제출 필수
 - ‘㉕ 구비서류’ 중 ⑦~⑪은 선정 후 제출 가능(단, 선정 이후라도 요건 · 평가 사항 등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선정이 취소됨)
 - ※ 직인 및 날인이 누락된 경우 접수가 인정되지 않음

<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 >

서류명	서류 內 불입서류	제출
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신청서식)		응모 시 제출
㉕ 구비서류 (①~⑪)	① 소요예산 산출근거 자료(예산계획의 합리성 판단) - 견적서, 구매단가 정보 등	응모 시 제출
	②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③ 청렴서약서	
	④ 재무제표(2022년, 2023년)	
	⑤ 유사과제 검색결과 ※ 별첨의 작성 매뉴얼 확인	
	⑥ 우대사항 증빙자료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과학기술유공자확인증	선정 후 제출 가능
	⑦ 법인등기부등본	
	⑧ 사업자등록증	
	⑨ 국세 완납 증명서(납세증명원)	
	⑩ 지방세 완납 증명서(납세증명원)	
	⑪ 조합원 명부(신청일 기준)	

※ 신청서식은 홈페이지(www.setcoop.net)에서 내려받기 가능

7

선정평가

○ 평가절차

- (요건검토) 신청 요건 및 서류내용 사실 확인·검토 진행(필요시 현장조사)
- (선정평가) 발표평가로 진행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서면평가를 통해 지원 규모의 1.5배수 이내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 (종합심의) 과제별 지원여부, 최종 정부지원금 확정 및 사업계획 보완의견 도출

○ 평가일정(안)

사업신청	요건 검토	선정평가	종합심의	선정공고
협동조합	SETCOOP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SETCOOP
2.26.~4.1.	4.2.~4.12.	[서면] 4.15.~4.24. [발표] 4.25.~4.30.	4.24.~4.30.	5.2.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 및 심사를 위해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평가방법) 유형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 실시

- 발표평가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발표 시간은 없으므로 응모 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
- 평가위원별 점수를 산출평균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선정

8

기타사항

- 사업 운영·관리, 사업비 산정 및 정산 기준 등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름
- 지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는 사업시행을 위해 비공개로 조건으로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게 제공될 수 있음
- 평가기준에 적합한 협동조합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 협동조합이 유형별 지원규모 수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모집 실시
- 사업 선정 후 사업수행 내용, 규모나 사업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상의 오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한 책임은 응모한 협동조합 측에 있음

【문의처】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사업화 지원사업 담당자
02) 3420-1282~3, setcoop@kofst.or.kr

※ 홈페이지(www.setcoop.net)에 신청 관련 상세 안내

- 참고
1.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 유형선택 예시 1부.
 2. 총사업비 편성 기준 1부.
 3. 사업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1부.
 4. 신청자격 상세 기준 안내 1부.
 5. 신청 제한사항 및 지원제외 1부.
 6. 추진 일정(안) 1부.
 7. 유사과제 검색결과 작성 매뉴얼 1부.

- 붙임
1. 2024년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식(일반형) 1부.
 2. 2024년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식(심화형) 1부.
 3. 2024년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식(고경력형) 1부. 끝.